산업통상자원부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http://www.motie.go.kr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
경제혁신 3개년 계획
3년의 혁신, 30년의 성장

2014년 12월 24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산업피해조사팀 서정란 팀장, 박수진(5864), 이정희(5865), 신정미(5868)
덤핑조사팀 방순자 팀장, 박종희(5873) 곽정란(5872), 나강운(5875), 심상수(5874)
불공정무역조사팀 정석진 팀장, 이범천(5881), 위민이(5883)

제337회 무역위원회 개최

-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최종 긍정판정
- 『말레이시아·태국 및 인도산 POY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(원심)』 및 『대만 및 중국산 PO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(2차재심)』에 대한 최종 부정판정
-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에 대한 예비 긍정판정
- 티셔츠, 선글라스 등 2개 생산기업에 대한 FTA로 인한 무역피해판정

□ 무역위원회(위원장 : 홍순직)는 '14. 12. 23(화), 제337차 회의를 개최하여,

①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해 9.07~29.41%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하여 부과하기로 최종 긍정판정하고,

② 『말레이시아·태국 및 인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 연신사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(원심)』 건과 『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 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(2차재심)』 건에 대해서는 각각 최종 부정판정하였음

③ 또한,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에 대해서는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가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예비판정을 하였으며,

④ FTA 이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무역조정지원을 신청한 티셔츠, 선글라스 2개 품목의 생산기업에 대해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정함

□ 무역위원회의 자세한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음

1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최종판정

□ 무역위원회는 (주)대동산업, (주)대보세라믹스, 한보요업(주)와 성일요업(주)(이하 "요청인")가 요청한 『중국산 도자기질 타일*』의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 건에 대하여,

* 용도 : 건축물의 외벽, 내장 및 바닥에 부착하는 마감재

○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, 향후 3년간 9.07%~29.41%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함

* 원심 덤핑방지조치기간 및 관세율 : 5년('05.12.30.~'10.12.29. 3.51%~29.41%)
재심 덤핑방지조치기간 및 관세율 : 3년('11.7.20~'14.7.19. 9.14%~29.41%)

□ 이번 연장조치로, 저가의 수입산 도자기질 타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타일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

* 도자기질 타일의 국내시장규모('13년)는 약 1,012,446톤 수준으로, 국내생산품이 25.3%, 중국산 물품이 63.0%, 기타국산 물품이 11.7%를 차지함.

□ 무역위원회는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,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 공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을 결정하게 됨

* 조사개시 공고일: '14.2.28.

2 『말레이시아·태국 및 인도산 POY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(원심)』 및 『대만 및 중국산 PO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(2차재심)』에 대한 최종판정 개요

□ 무역위원회는 (주)티케이케미칼 및 (주)성안합섬이 신청한 『말레이시아·태국 및 인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 연신사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(원심)』에 대한 덤핑조사 신규 신청건과 『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 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(2차재심)』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 신청건에 대해서는,

○ 『말레이시아·태국 및 인도산 POY』 및 『대만 및 중국산 POY』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없다고 최종판정하였음

3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

□ 무역위원회는 현대제철(주)와 동국제강(주)(이하 '신청인')가 신청한 『중국산 H형강』에 대한 반덤핑조사의 예비판정에서,

○ 중국산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(잠정덤핑률 : 17.69~32.72%)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, 조사를 계속하기로 함

□ 조사대상물품인 H형강은 고층빌딩, 공장, 창고, 격납고, 체육관 등의 기둥재와 철골 아파트, 학교, 상가, 지하철, 교량 등의 기초용 말뚝 등으로 사용되는 건설자재로

○ 국내시장규모는 약 2조 2,500억원 수준('13년 기준)이며, 이중 국내산이 약 70%내외, 중국산이 약 30%내외를 차지하고 있음

○ 신청인은 중국산 H형강의 덤핑으로 인해, 국내산 H형강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는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'14. 5. 30일 덤핑조사를 신청하였음

□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(2개월 연장가능)간 본조사를 실시한 뒤, '15. 3월경 덤핑방지관세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 할 예정임

4 티셔츠, 선글라스 생산기업에 대해 FTA로 인한 무역피해 인정

□ 무역위원회는 티셔츠 및 선글라스를 생산하는 2개 기업에 대해 FTA 협정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이 증가하여 매출 및 생산이 감소하는 무역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정하였음

* ASEAN산 티셔츠 수입금액(천$) : ('13상) 67,812 → ('14상) 71,189, 5.0% 증가
* EU산 선글라스 수입수량(천개) : ('12하) 402 → ('13하) 508, 26.3%증가

○ 이들 기업은「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저리융자,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

<붙임 1>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 최종판정개요

<붙임 2>「말레이시아, 태국 및 인도산 POY(원심)」와「대만 및 중국산 POY(2차 재심)」최종판정 개요

<붙임 3>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개요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무역위원회 POY-산업피해조사팀 박수진사무관(☎ 044-203-5863), 타일-신정미 주무관(☎5868), H형강-이정희 사무관(☎586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붙임 1>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최종판정 개요

□ 조사 개요

○ 요청인 : 대동산업(주), (주)대보세라믹스, (주)한보요업, 성일요업(주)

○ 재심사대상국 : 중국

○ 재심사대상물품

- 품명 : 도자기질 타일(Ceramic Tiles)
- 조사범위 : 점토, 고령토 및 장석 등의 비금속광물을 주 원료로 성형 및 소성공정 등을 거쳐 제조한 타일로서,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70mm~1,300mm 이내의 사각판 형태의 제품
- 관세분류 : HSK 6901.00.3000, 6907.90.1000, 6907.90.9000, 6908.90.1000, 6908.90.9000
- 용도 : 건축물의 외벽, 내장 및 바닥에 부착하는 마감재

□ 국내시장 현황

○ 국내생산자 : 대동산업(주), (주)대보세라믹스 등 11개사

○ 수입자 : (주)차이나무역, (주)건진통상, (주)HS세라믹 등

○ 수요자 : (주)대우건설, (주)롯데건설, (주)포스코건설 등 건설업체

○ 국내시장 규모('13년) : 약 1,012,446톤

* 시장점유율 : 국내생산품(25.3%), 재심사대상물품(63.0%), 기타국물품(11.7%)

□ 그 동안의 조사 경과

○ '14. 1. 9. : 재심사 요청서 접수(기획재정부)

○ '14. 2.27. : 조사 개시 결정(기획재정부 공고 : '14. 2.28.)

○ '14.8~9월: 국내 현지실사

○ '14.10.23. : 공청회

○ '14.12.23. : 최종판정

<붙임 2> 「말레이시아, 태국 및 인도산 POY(원심)」와 「대만 및 중국산 POY(2차 재심)」 최종판정 개요

□ 조사 개요

○ 신청인 : (주)티케이케미칼, 성안합섬(주)

○ 조사대상국 : (원심)말레이시아, 태국 및 인도, (2차 재심) 대만 및 중국

○ 조사대상물품

- 품명 :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(Polyester Filament Partially Oriented Yarn, POY)

- 조사범위 : 테레프탈산(TPA)과 에틸렌글리콜(EG)을 중합(重合)하여 추출되는 가늘고 긴 형태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

- 관세분류(HSK) : 5402.46.9000(기타)

- 용도 : 주로 연신가공사(DTY), ITY, 기타 혼섬사와 같은 가공사의 모사(母絲)로 사용되며, 의류·비의류 분야 등에서 광범위한 소재로 사용

□ 국내시장 현황

○ 국내생산자 : (주)티케이케미칼, 성안합섬(주) 등 8개사

○ 수입자 : 칠성섬유(주), (주)블레스랜드, (주)신원합섬, (주)미도교역 솔상인터내셔날(주) 등

○ 수요자 : DTY(Draw Textured Yarn), ITY(Interlaced Textured Yarn) 등 원사업체

○ 국내시장 규모('13년) : 약 2,830억원(약 140,000톤)

* 시장점유율 : 국내생산품(57.8%), 조사대상물품(41.8%), 기타국물품(0.4%)

□ 그 동안의 조사경과

○ 원심(말련, 태국, 인도산) 조사경과 : 조사개시결정 공고('14. 5. 30.) 예비판정 ('14. 9. 25), 공청회('14. 11. 27) 및 최종판정('14. 12. 23)

○ 재심(대만, 중국산) 조사경과 : 조사개시결정 공고 ('14.3.14), 공청회 ('14. 11. 27) 및 최종판정('14. 12. 23)

<붙임 3>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예비판정 개요

□ 조사 개요

○ 신청인 : 현대제철(주), 동국제강(주)

○ 조사대상국 : 중국

○ 조사대상물품

- 품명 : H형강

- 조사범위 : 철이나 비합금강 또는 합금강의 구조용 형강 중 이축대칭(상하 및 좌우대칭)단면이 H형상을 한 물품 중 높이가 80밀리미터 이상인 것

- 관세분류 : HSK 7216.33.3000, 7216.33.4000, 7216.33.5000, 7228.70.1010, 7228.70.1090

□ 국내시장 현황

○ 국내생산자 : 현대제철(주), 동국제강(주)

○ 수입자 : 코오롱글로벌(주), 한국선재(주) 등

○ 수요자 : 타워스틸(주), 부국철강(주), 경성철강(주)

○ 국내시장규모('13년) : 약 2조 2,500억원(2,924천톤)

* 시장점유율 : 국내생산품(69.0%), 조사대상물품(28.3%), 기타국물품(2.7%)

□ 그동안의 조사경과 및 향후 조사 일정

○ '14. 7.30. : 조사개시 결정공고

○ '14.10.13 : 생산자 및 수입/수요자 답변서 접수

○ '14.10.17. : 생산자 및 수입/수요자 사전 의견 청취 회의

○ '15. 1월(예정) : 국내생산자·수입자·수요자 현지 실사

○ '14. 2월(예정) : 공청회

○ '14. 3월(예정) : 최종판정